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안내

2008. 5

Invest KOREA

○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여러 제도와 규정이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08 대한민국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9 KOTRA내 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우. 137-749)

- 전 화 : (82-2) 3460-7545

- Fax : (82-2) 3460-7946

- 홈페이지 : www.investkorea.org

※ 본문에 표시된 법/영/규칙/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임.

목 차

1. 개 요	1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1
(1)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1
(2) 외국투자가 및 출자목적물 등의 정의	3
(3)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5
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5
다.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6
2.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자유화	9
가. 대외송금의 보장	9
나. 내국민과 동등대우	9
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9
라. 외국인투자 제한	10
3. 외국인투자신고 및 인·허가	11
가. 외국인투자신고의 기본원칙	11
(1) 사전신고	11
(2) 사후신고	11
(3) 신고 및 허가내용통보	11
※ 기업결합신고	13
나.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16
(1)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16
(2)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25
(3)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31
(4)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32

다.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사무	34
(1)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 민원의 처리	34
(2) 유형별 민원사무	36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48
(1)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48
(2)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의 처분	48
(3)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49
(4)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국내기업 주식의 취득	49
(5)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신고	50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52
가. 조세지원	52
(1) 조세지원제도의 의의	52
(2) 조세감면 대상	52
(3) 조세감면 세부내용	57
(4)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절차	60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63
나.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65
(1) 국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65
(2) 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65
(3) 국·공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임대료감면 신청절차	66
다. 관세지원	67
(1) 관세감면	67
(2) 수입통관상 특례	68
(3) 자본재 출자에 관한 특례	69
(4) 자본재 사후관리	69
라. 기타	70

5.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71
가. 현금지원 대상	71
나. 현금지원 용도	73
6.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74
가. 지정목적	74
나. 대상자	74
다. 지정권자	74
라. 주요 수행업무	74
7. 외국인투자지역	75
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	75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75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75
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개발·관리	77
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황	78
(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78
(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79
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대한 지원	80
● 외국인직접투자관련 서식	82

1. 개요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1)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법 제2조제1항 제4호 가목)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후 주식 등의 일부양도 또는 감자 등으로 영 제2조제2항의 본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자로 본다.
 - 투자금액(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영 제2조제2항)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영 제2조제2항제1호)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 미만이라도 가능 (영 제2호제2항제2호)
 -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장기차관(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당해 해외모기업 및 외국투자가

(개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시 정하여진 대부기간 기준)

※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영 제2조제3항 및 제4항)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자(개인)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법 제2조제1항제4호 다목 및 라목, 영 제5항 및 제6항)

-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시설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2) 외국투자가 및 출자목적물 등의 정의

■ 외국인(법 제2조제1항제1호)

-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영주권과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법 제2조제2항, 영 제3조)
-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영 제2조제1항)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IFC(국제금융공사)·ADB(아시아 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외국투자가(법 제2조제1항제5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법 제2조제1항제6호)

-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법 제2조제1항제6의2호, 영 제2조제7항)

-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 약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그 밖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출자목적물(법 제2조제1항제7·8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 산업시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지적재산권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영 제2조제8항)
- 외국인의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 해외모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개인) 또는 당해 해외모기업 및 외국투자자(개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또는 기타 해외차입금의 상환액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영 제2조제9항)

- 외국인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기타 내국지급수단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영 제2조제10항)

(3)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 외국인투자금액(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영 제2조제2항)
-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임(법 제5조제1항)

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 기본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 고시)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 조세특례제한법령(제5장 :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목적(법 제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격

-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

■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
-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국내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 영위 가능

다.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 기본원칙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에 의한 총 1,145개 업종 중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와 관련된 62개 업종을 제외한 1,083개 업종이 외국인투자 대상임
- ※ 62개 제외업종 중 교도기관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2001.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는 외국인 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금지사유(법 제4조제2항)

-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 다만, 개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하거나 국내기업과의 합작 의무를 부과한 업종은 부분개방

■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 총업종 수('08년 2. 29 현재) : 1,083개
 - 전면개방업종 : 1,054개
 - 부분개방업종 : 26개(허용기준 충족시 외국인투자 가능)
 - 미개방업종 : 3개(원자력발전업, 라디오방송업, 지상파방송업)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부분개방업종 포함) : 29개

업종명(표준산업분류)	허용기준 ¹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육우 사육업 (0121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연근해 어업 (0311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05113)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원자력 발전업 (35111)	< 미개방 >
수력 발전업 (35112)	-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화력 발전업 (35113)	- 수력발전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기타 발전업 (35119)	- 수력발전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송전 및 배전업 (35120)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 보다 낮아야 함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240)	- 「전기사업법」 제82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육류 도매업 (4631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내항 여객 운송업 (50121)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허용 • 허용대상 :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 대한민국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내항 화물 운송업 (50122)	
정기 항공 운송업 (51100)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부정기 항공 운송업 (51200)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신문 발행업 (58121)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업종명(표준산업분류)	허용기준 ¹
라디오 방송업 (60100)	< 미개방 >
지상파 방송업 (60210)	< 미개방 >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성채널 사용사업은 미개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 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유선방송업 (60222)	-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 사업은 미개방)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9)	- 외국인투자비율이 33%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유선통신업 (61210)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기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 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증권거래법」 제2조제20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무선통신업 (61220)	-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위성통신업 (61230)	-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61299)	-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뉴스 제공업 (63910)	-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내은행 (64121)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단,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주1) 특정내용이 없이 연·월·일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전면개방됨.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부분개방 또는 개방폭이 확대됨

2.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자유화

가.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금), 주식 등의 매각대금, 장기차관계 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대외송금 보장(법 제3조제1항)
 - 대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영 제4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상 천재지변·전시·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취해지는 외국환거래 정지 또는 기타 제한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음(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나. 내국민과 동등대우

- 영업활동의 내국민대우 원칙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내국민 또는 내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법 제3조제2항)
 - ※ 조세감면이나 공장입지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국민보다 우대

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1항)
 - 단,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법 제4조제2항)
-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내국민 또는 내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

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법 제4조제4항)

라. 외국인투자 제한

-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검토요청을 할 수 있음(영 제5조제1항제2호). 단,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검토요청을 할 수 없음(영 제5조제5항)
 -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외무역법 제19조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 등이거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식경제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의 검토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 경우 허용여부등을 지체없이 외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영 제5조제7항, 제8항)
-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양도하여야 함(영 제5조제9항)
- 외국인은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영 제5조제6항)

3. 외국인투자신고 및 인·허가

가. 외국인투자신고의 기본원칙

(1) 사전신고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포함)
-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기업 제외)이 발행한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30일 이내 신고
 -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시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상기 외국인투자내용의 변경신고

(2) 사후신고

-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신고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의 장에게 신고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식 또는 지분의 감소신고(상법 제43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말소 신청

(3) 신고 및 허가내용통보(규정 제8조제1항)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본을 주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다만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증액투자의 경우는 제외

※ KOTRA 해외투자거점무역관(35개) 현황

○ 미주지역(9)

- 미 국 :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달라스, 워싱턴, 실리콘밸리(구.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 캐나다 : 토론토, 밴쿠버

○ 구주지역(14)

- 프 랑 스 : 파리
- 독 일 :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 영 국 : 런던
- 스 웨 덴 : 스톡홀름
- 덴 마 크 : 코펜하겐
- 네덜란드 : 암스텔담
- 벨 기 에 : 브뤼셀
- 이탈리아 : 밀라노
- 스 위 스 : 취리히
- 오스트리아 : 빈
- 스페인 : 마드리드
- 핀 란 드 : 헬싱키

○ 아주지역(11)

- 일 본 :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 호 주 : 시드니, 멜버른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대 만 : 타이페이
- 중 국 : 베이징, 상하이, 홍콩

○ 중동지역(1)

- 아랍에미레이트 : 두바이

※ 기업결합신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신고대상 기업결합(법 제12조제1항)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이하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이하 “상대회사”)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상대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상대회사 발행주식을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의 경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에 한하며 계열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방이 대규모 회사(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상대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상대회사와의 합병 또는 상대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상대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다음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다만,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제외)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상법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신고의무자(법 제12조제10항)

- 주식취득의 경우는 취득회사,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사회사가 공동으로, 영업양수의 경우는 양수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겸임임원의 소속회사,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신설에 참여하는 회사
- 신고의무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자산총액 및 매출액의 규모(법 제12조제2항)

-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함
- 다만,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 포함)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함

■ 기업결합 신고기한(법 제12조제6항)

- 사전신고
 -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임원겸임의 경우는 제외)
 - ※ 이행행위의 금지(사전신고 대상인 경우에 한함)
 -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후신고 : 사전신고대상 이외인 경우에는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접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심사기간(법 제12조제9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기업결합신고의 구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일반신고대상”) 및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간이신고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함
 -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인 경우
 -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 간이신고대상은 기업결합 유형별 신고서에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별표6(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을 첨부하여 신고(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고도 가능)

■ 위반시의 조치

- 사전신고 위반(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지연신고 하였으나 이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신고 위반(신고지연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또는 신고지연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허위신고 등의 경우 최고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나.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1)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투자형태)

- 신주취득
 - ① 신설법인의 설립(단독 혹은 합작)
 - ②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증자에 참여
- 비영리법인에 출연

■ 외국인투자신고(법 제5조제1항·법 제8조의2제1항)

-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무역관·35개 해외투자거점무역관
-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대리신고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1부
 - 기타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사본 각 1부)
 -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 인정된 차입금의 상환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필증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입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류
 - ①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등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②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주식, 지분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입을 증명하는 서류
-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아래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①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이상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
 - 과학기술 분야 외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함을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의결 서류
 - ①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
 - ②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

- 신고처리기간 및 방법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 기재사항 누락여부, 외국인투자요건의 적합여부, 영위업종의 제
외업종 및 제한업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 교부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자금의 도입

- 현금으로 도입하는 경우
 -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송금
 -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 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투자자금을 송금

〈투자자금 송금시 주요 기재내용〉

- ① 송금인 : 외국투자가(타인명의로 송금할 경우 SWIFT 전문상에 반드시 외국투자가를
대신하여 송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② 수취은행 : 00은행 00지점
- ③ 수취인계좌번호 : 000-00-000-0000 (은행별로 상이)
- ④ 수취인 : 외국투자가 또는 외투기업명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계좌로의 입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은행에 따라 투자가의 송금편의를
위하여 기재가능
 - ※ 자금처리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자금대리에 관한 공증된 위임장 필요
- ⑤ SWIFT Code : 00000 (은행별로 상이)
- ⑥ 자금용도 : 송금정보 추가입력사항에 자금용도 명시
 - 예) 회사설립자금 또는 증자자금(신주취득), 주식취득대금(기존주취득) 등

〈신주취득자금 송금방식〉

- ① 비계좌 송금방식(일반적인 방식)
 - 외국투자가가 송금할 국내은행의 계좌 없이 지점코드만 확인하여 송금하거나 또는
국내은행 지점의 임시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송금(은행별로 다소 상이)
- ② 외국투자가의 비거주자 대외계정 송금방식

- 외국투자가가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비거주자외화계정)을 미리 개설하여 송금
- 해외로부터 송금·예치된 투자자금은 은행에 일시 예치되었다가 법인설립등기(증자등기 포함)전,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인 주금납입계좌로 이동되며, 은행은 이때 외화매입증명서 및 법인설립등기(증자등기 포함)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을 발급
 - ※ 외화자금 송금 → 외화 예치(매입) →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 주금납입계좌 입금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 법인설립 또는 증자등기 → 법인계좌에 투자자금 이체 (법인이 아닌 경우(예: 개인사업)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의(상호명 부기)의 계좌에 입금)
-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의 경우
 - 현금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공항세관 등)에 신고 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입금(비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외국환신고필증, 여권 등이 필요)
 - 법인설립 전에 은행에 예치된 외화를 원화로 매입하여 주금납입계좌에 입금(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하며, 이때 은행은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
 - ※ 외국환은행에 예치(매입) →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 주금 납입계좌입금 →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발급 → 법인설립 또는 증자등기 → 법인계좌에 입금 (법인이 아닌 경우(예: 개인사업)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의(상호명 부기)의 계좌에 입금))
- 자본재를 현물로 도입할 경우
 - 도입물품명세서 3부를 작성, 통관 전에 외국인투자신고기관(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에서 검토·확인 신청
 - 제출서류 : 도입물품확인신청서 3부, 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 ※ 도입물품명세 확인을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봄(법 제29조제2항)
 - 자본재 도입 완료시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 Invest KORE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2부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
-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 시에 사용
 - ※ 현물출자등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자본재 도입 및 법인설립등기보다 먼저 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법인설립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을 따름
 - 법인설립등기는 Invest KOREA의 법원 파견관에게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신청은 Invest KOREA 국세청 파견관에 신청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 제21조제1항및제2항, 영 제27조)
 -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 또는 Invest KOREA에 등록 신청
 -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전이라도 외국인이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법상 “외국인투자” 요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 가능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는 국내기업과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 배당금송금, 외국인채류연장 등 제반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외화매입(또는 예치)증명서(자본재 현물출자인 경우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 연구사업개요서, 연구전담인력현황, 연구시설명세서(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인 경우)
 -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서(주식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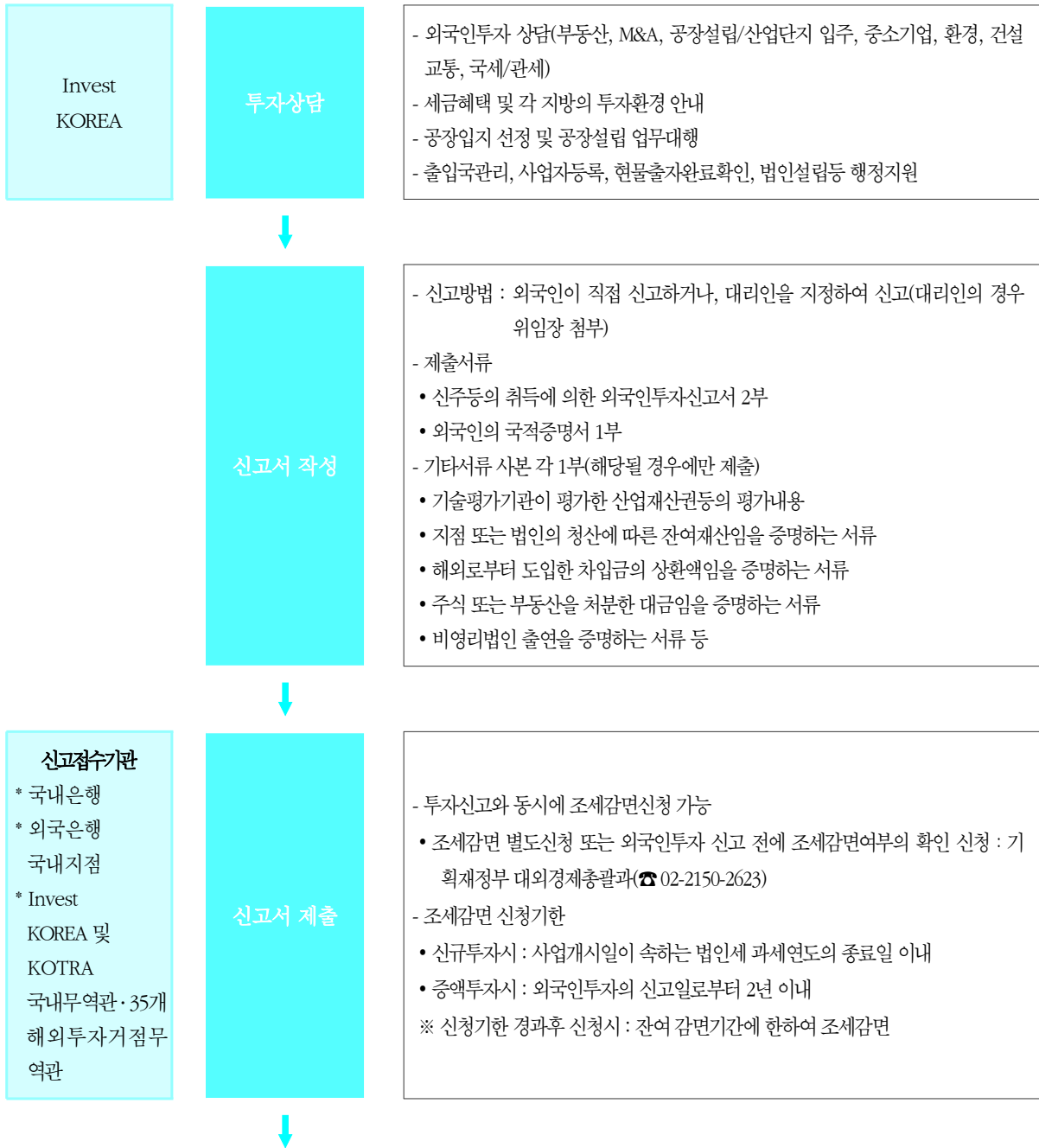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영 제28조제1항, 규칙 제17조의2)

-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 ※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무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허가

-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장설립등의 사업승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아야 함
- 민원사무의 성격, 처리기관 및 절차에 따라 직접처리민원, 일괄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사무로 분류하고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도 >







(2)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투자형태)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기존 국내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외국투자자가 취득

- ① 외국투자자와 국내인 주주간의 직접거래
- ②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10% 이상)

■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허가신청(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 방위산업체가 아닌 기업의 기존주식취득 : 사전신고제.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30일 이내 신고
 -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 무역관·35개 해외 투자거점무역관
 - 제출서류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대리 신고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기타서류(해당시 각 1부 제출)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 인정된 차입금의 상환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류
 -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등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수인이 복수인 경우)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처리기간 및 방법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 기재사항 누락여부, 영위업종의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 교부
-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취득 : 허가제
- 신청인 및 신청접수기관
- 신청인 : 외국투자가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신청접수기관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02-2110-5351~60)
- 제출서류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서 2부
- 기타서류(신고제와 같음)
- 처리기간 및 방법
- 처리기간 : 15일(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
 - 처리방법 : 주무부장관과 협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방위산업체 현황(2007. 7월말 현재) 〉

분 야	주요 방산업체	일반 방산업체
화 력	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두원중공업, 창원특수강, 대우정밀, S&T, 유니모테크놀로지 (7)	진성테크, 대동기어, 진영정기, 동성전기, 칸위크홀딩 (5)
탄 약	동양정공, 알코아코리아, 삼양화학, 풍산, 한일단조, 한화, 풍산FNS (7)	수원지관 (1)
기 동	동명중공업, STX엔진, 로템, LS전선, 평화산업, 두산중공업, 다이모스 (7)	광림, 기아자동차, 동진전기, 신정개발, 시공사 (5)
항공유도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한국항공우주산업, 극동통신, 금호타이어, 다윈프릭션, 퍼스텍, 넥스원퓨처 (8)	한벨헬리콥터, 한국로스트웍스공업, 테크, 경주전장, 성진테크윈, 비전이노텍, 한양네비콤, 단암시스템 (8)
합 정	강남,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세방하이테크, 대우조선해양 (5)	스페코, 두산엔진, 해안기계산업 (3)
통신전자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삼성탈레스, 연합정밀, 이화전기, 티에스텍, 비즈로셀, 이오시스템, 한림에스티, 비앤비솔루션, 프롬투정보통신 (10)	현대제이콤, 동일자동차, 디지털선일, 인소팩, 삼영이앤씨 (5)
화 생 방	삼공물산, 한국통신기 (2)	-
기 타	은성사, 대양전기, 한국화이마, 서울엔지니어링, 오리엔탈코, 진양공업, 발레오전장(7)	대원강업, 로우테크놀로지, 동양테크, 대명, KSP, 크로시스, 대신금속, 도담시스템 (8)
계	53개	35개

■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화자금 도입

-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송금시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에 송금하고 이를 매각하여 내국통화로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계약조건에 따라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
 - 다만, 외화를 직접 인출하여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3항)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교부받을 것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시 필요

〈기존주 취득자금 송금방식〉

① 비계좌 송금방식(일반적인 방식)

- 외국투자가가 송금할 국내은행의 계좌 없이 지점코드만 확인하여 송금하거나 또는 국내은행 지점의 임시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송금한 후 내국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 (은행별로 다소 상이)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계좌 송금방식

- 내국인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법인계좌로 송금하여(은행은 자금용도 확인후 법인계좌로 입금) 외투기업이 각 주주들에게 계정간 이체방식으로 대금 지급

③ 내국인주주 계좌 송금방식

-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주주(법인 또는 개인) 앞으로 직접 송금 (은행은 자금용도 확인후 입금 - “주식매각대금”)
-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시 내국인주주의 협조 필요

○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시

- 관할 세관(공항세관 등)에 신고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내국통화로 기존주주에게 지급하거나,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교부받을 것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허가 등의 취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 제21조제1항및제2항, 영 제2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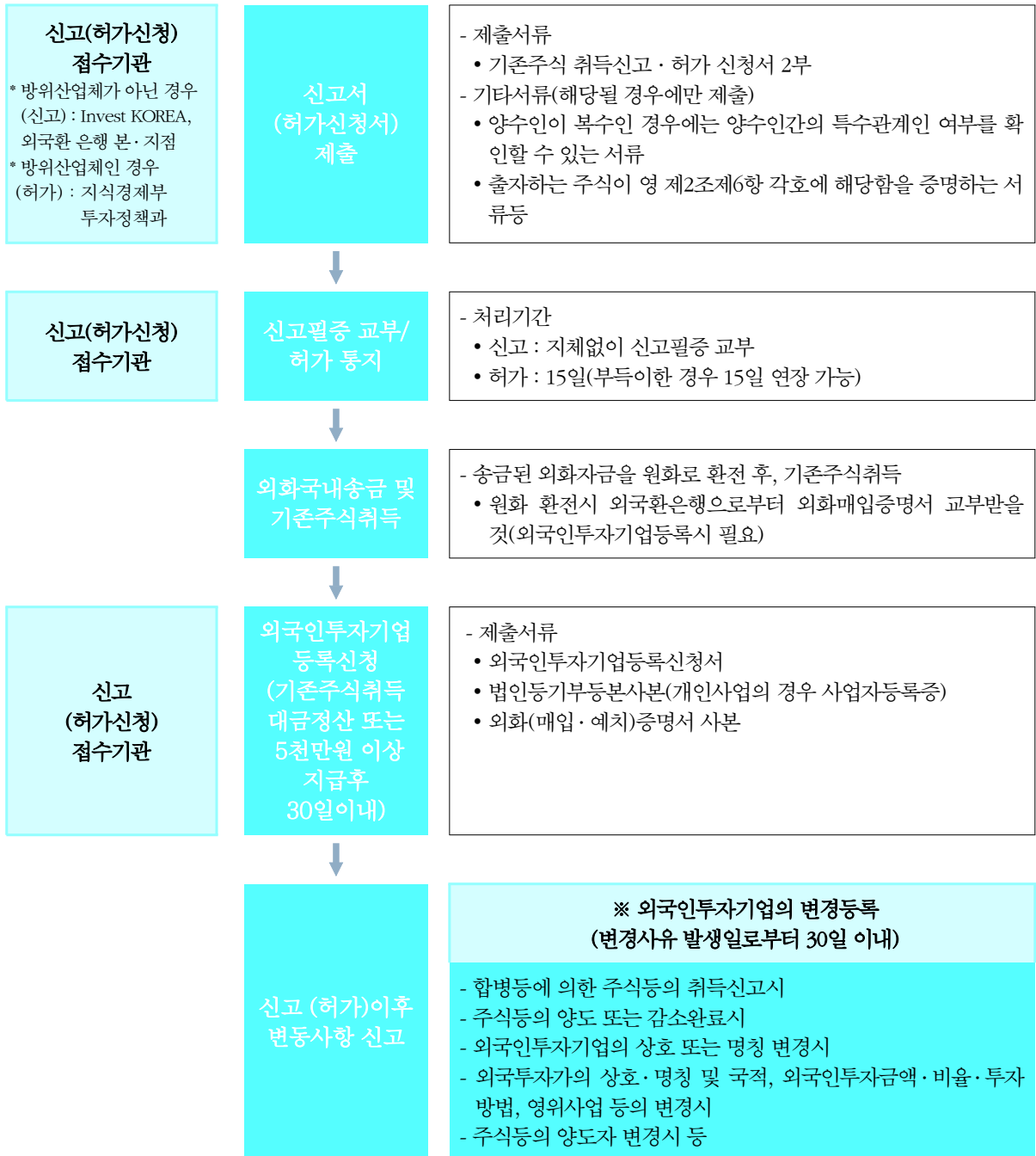
- 기존주식 등의 취득대금 정산 30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 또는 Invest KOREA에 등록 신청
- 기존주식 등의 취득대금 정산 전이라도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외축법상 “외국인투자” 요건에 부합될 경우(법 제21조제2항)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개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의 취득
 - 기존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등을 취득하여야 함

■ 유의 사항

-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 등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양도 등의 신고(법 제7조제1항제3호)와의 구별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국투자자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후 30일 이내에 주식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다만, 외국투자자가 법 제23조의 주식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 외국인의 주식취득 신고 의무 면제. 단, 양수외국인의 국적증명서 첨부)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취득
 - 외국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9%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던 상태에서 3.5%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자 한다면 (총 주식취득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3.5% 추가 취득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므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또는 허가신청)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신고 원칙의 예외로써 취득후 30일 이내 신고 가능(법 제6조제1항 단서)
-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 매출액의 1/100 이하 기업에 투자(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 매출액의 비율이 1/100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할 수 있음
 - 단, 주식등을 취득한 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1/100초과시 외국인 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해야 함
- 제한업종 영위기업에의 투자제한(영 제5조제4항)
 - 외국인은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음
 - 부분 허용업종을 2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의 투자의 경우 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도 >



(3)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투자형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당해 해외모기업 및 외국투자가(개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 대부계약시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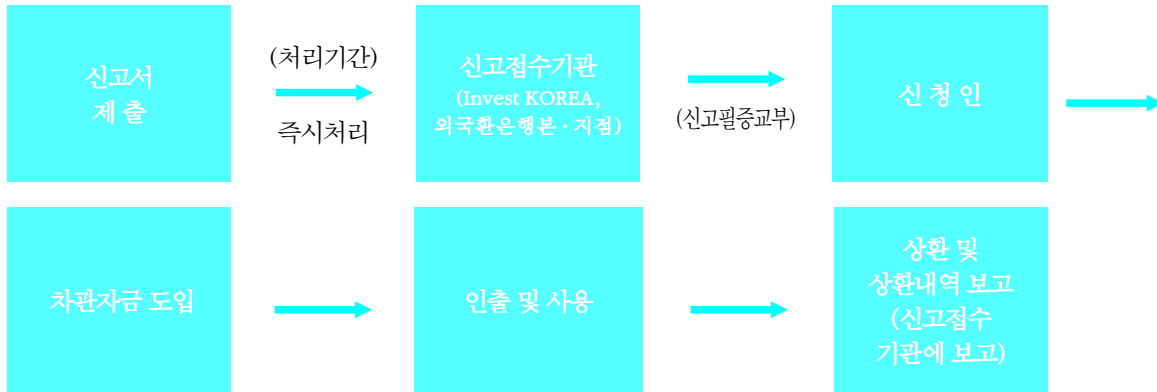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 신고(법 제8조제1항)

-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무역관·35개 해외투자 거점무역관
- 제출서류
 -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차관계약서 사본 1부
-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 차관계약의 변경시 : 신고서 2부 및 변경계약서 사본 1부
 - 차관제공자의 변경시 : 신고서 2부,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계약서 사본 각 1부
- 신고처리기간 : 즉시(신고필증 교부)

■ 차관의 조기상환 사실 통보(영 제6조제2항)

- 수탁기관장은 외촉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중 차관의 조기상환의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도 >



(4)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형태)

- ①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②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③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인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④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⑤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 외국인투자 신고(법 제7조제1항)

-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인투자가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투자가가 외국인투자신고필증(또는 허가통지서)을 발급받은 기관

- 제출서류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신고서 2부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 외국인투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류
 -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등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계약
- 신고기간 : 주식등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처리기간 : 즉시 신고필증 교부

<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절차도 >



다.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사무

(1)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 민원의 처리

■ 민원의 체계적 분류

- 민원사무를 민원사무의 성격, 처리기관 및 절차에 따라 직접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 일괄처리민원사무로 분류하고 각각의 처리절차에 따라 Invest KOREA에서 직접 또는 대행 처리

■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의 신속처리절차

- 일괄처리제 도입
 -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설립 등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민원을 민원사무의 성격에 따라 10가지 범주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주된 민원이 인·허가되는 경우 부수된 민원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간주(법 제17조제1항)
 - ⇒ 외국투자자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행정기관이 대신 처리하게 되어 외국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

■ 시·도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법 제16조제1항)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군·구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둘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외국인투자관련 민원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를 대행

■ 민원처리 관계기관과의 협의(법 제17조제4항)

- 민원신청서류를 이송 또는 접수받은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처리기간 내에 의견 제출
- 관계기관의 장이 부동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 자동승인제(법 제17조제5항)

- 외국인투자에 관련되는 모든 민원에 처리기간을 부여하고 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관청의 처리지연 방지

■ 선(조건부) 승인제(법 제17조제10항)

-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사후에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

■ 거부시 절차규정 마련

- 거부사유의 명시(법 제17조제5항)
 -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외국투자가 등에 통보
- 거부사유의 해소시 허가의무(법 제17제7항)
 - 외국투자가가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허가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3일 내에 당초의 허가를 하여야 함
 -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함

■ 기타 민원사무 처리규정

-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영 제24조제13항)
-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때로부터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관계법령등에 의한 허가등이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일괄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 직접처리민원과 동법에서 정한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17조제11항)

(2) 유형별 민원사무

직접처리민원사무

■ 개념(법 제17조제2항)

- Invest KOREA에 파견된 공무원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전결권을 부여받아 직접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
- 종류(11개) : 현물출자완료확인, 사업자등록,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 처리절차

- 외국투자가 또는 그 대리인이 Invest KOREA에 직접신청,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이 직접 처리
- 해당 개별법에서 정한 서식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에 의거 처리

■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종류 및 처리기간(영 제24조제1항 및 영 별표1)

민원사무	근거법령	처리기간
1.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3항	즉시
2.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5조	7일
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즉시
4. 근무지 변경·추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즉시
5.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즉시
6.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즉시
7.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즉시
8.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즉시
9.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즉시
10.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즉시
11. 체류지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즉시

일괄처리민원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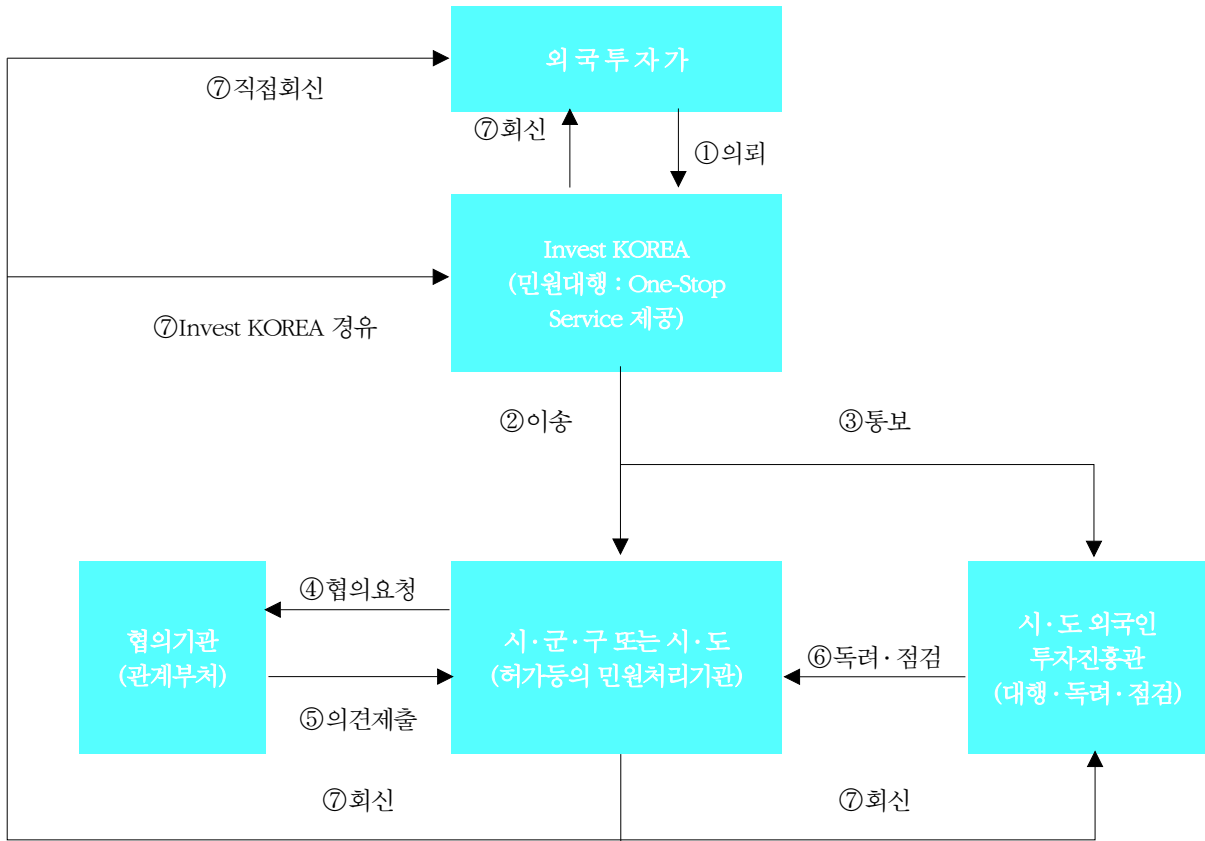
■ 개념(법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 민원사무의 성격 및 처리기관 등을 고려하여 10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각 민원에 대한 주요 허가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는 의제대상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민원사무

■ 처리절차

- 법에서 정한 민원서식 및 기간에 따라 처리
- 일괄처리민원신청서에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민원의 명세서를 첨부

■ 일괄처리민원사무절차 흐름도



※ 민원처리 및 결과회신시 유의사항

- ⑧ 처리기간연장 통보 : 당초 처리기간 이내 연장 가능
- ⑨ 민원내용 보완요구 : 민원별 보완조건 및 보완시기 제시(보완처리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미산입)
- ⑩ 조건부 승인 : 민원별 미비사항 보완을 조건으로 선승인
- ⑪ 허가등의 거부 : 거부사유 해소 후 재신청(3일 이내 허가)

〈 설명 〉

- ① 민원인이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Invest KOREA에 의뢰(시·도 투자진흥관실에 대행 의뢰 또는 시·군·구에 직접신청 가능)
- ② Invest KOREA에서 민원신청서류의 작성 및 이송(제출) 대행
 - 일괄처리민원 및 개별처리민원에 대하여 해당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민원 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이때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의제처리민원과 관련된 구비서류도 동시에 제출
- ③ Invest KOREA는 민원신청서류의 이송(제출) 사실을 해당 시·도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
- ④ Invest KOREA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된 서류는 문서계를 경유 민원별 담당과에 접수 처리됨. 이 경우 민원처리기관장(담당과)은 협의기관과의 협의를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협의요청
- ⑤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은 민원처리기간 만료일 1일 또는 2일전(처리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민원의 경우)까지 의견을 민원처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의시 사유 명시
- ⑥ 민원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외국인투자진흥관은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점검하고, 허가거부를 통보받은 경우 그 거부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해결 조정
-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허가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등의 가부를 그 처리기간 내에 Invest KOREA, 민원인 및 시·도 투자진흥관에 회신
 -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 만료 익일에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자동승인제도)
 - 이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허가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함
- ⑧ 처리기간 연장 통보
 -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당초 처리기간 이내에서 처리기간 연장 가능

⑨ 민원내용 보완 또는 보정요구

-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민원신청내용에 대해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또는 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⑩ 선(조건부) 승인

-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의 보완시기를 정하여 조건부 허가등을 할 수 있음
-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단계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등의 직전 단계의 민원에 붙여진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조건보완시한

- (1)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허가 신청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 착공 신고시)까지
- (2) 건축허가 : 착공신고 시까지
- (3)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가동개시신고 시까지
- (4) 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등록 시까지

⑪ 인·허가 거부시 절차규정

- 민원사무의 허가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와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외국인투자 진흥관 및 민원인에게 서면통보하고, 민원인이 거부사유해소 후 재신청시 3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하며, 당초의 거부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함

■ 일괄처리 민원사무 처리기관

- 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② 사업계획의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③ 건축허가(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④ 폐수 또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시·도지사
- ⑤ 건축물의 사용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⑥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 시·도지사
- ⑦ 관광사업등록(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 시·도지사
- ⑧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⑨ 개발사업시행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⑩ 공장등록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6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장

■ 일괄처리민원사무의 종류 및 처리기간

구 분	의제대상 허가	처 리 기 간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농지전용 허가(농지법제34조) 등 총 20개 법률에 의한 37개 민원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수반하는 경우 등 기타의 경우 : 30일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도로점용의 허가 등(도로법 제40조제1항) 등 총 14개 법률에 의한 22개 민원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수반하는 경우 : 14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기타의 경우 : 21일
3.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제1항) 등 총 19개 법률에 의한 27개 민원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건축물 : 7일 (3일)
		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시·도 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포함) : 30일(15일)
		기타의 건축물 : 14일(7일)

비고 : 1) 건축허가시 ()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 기간을 의미함

2) 건축허가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14일로 함

구 분	의제대상 허가	처 리 기 간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폐수배출 시설이 없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등 총 6개 법률에 의한 7개 민원	7일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자가용전기시설의 사용전 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등 총 14개 법률에 17개 민원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 14일 기타의 경우 : 6일
6.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 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등 총 18개 법률에 의한 29개 민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	공중위생영업의 신고(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등 총 8개 법률에 의한 8개 민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 허가(농지법제34조) 등 총 9개 법률에 의한 10개 민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9.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초지조성허가(초지법 제5조) 등 총 26개 법률에 의한 43개 민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1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신고(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등 총 20개 법률에 의한 21개 민원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3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16조 제6항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는 20일

■ 민원서식 및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공장부지 예정구역과 시설배치계획이 표시된 지적도 1부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의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변경계획서, 변경사유서,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건축허가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본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개요를 포함함)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생산공정 흐름도 1부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1부
 - 현황도면(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 1부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 투자계획서,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서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 용도 구분된 토지이용계획서
 - 시설물 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
 - 조경계획
 - 전기·통신, 상·하수도 설치계획
 -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 조감도
 - 조성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토지 중 사유지의 경우 그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관광사업등록(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한함)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는 추가서류 필요
-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명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타인 소유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1부(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 1부(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 표시되어야 함)
- 시설배치계획도 1부(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함)
-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1부
-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부
- 주요설비·기기 및 기구 등 설치계획 1부
-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가입 등) 1부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개발사업시행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함) 1부
 - 통합영향평가서(통합영향평가서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함) 1부
 -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기본도) 및 인근 현황도 1부
 -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등의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1부
 -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획 1부
 - 국·공유지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1부
 -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 1부
 - 분야별 고용계획 1부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공장등록(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6서식)
 - 사업계획서(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개 별 처 리 민 원 사 무

- 개 념(법 제17조제3항, 영 제24조제5항)
 - 외국인투자가가 민원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사무
 - 해당법률에서 정한 민원서식 및 처리기간에 따라 처리
- 처리절차
 - 일괄처리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와 동일
- 민원사무 범위 : 총 97개
 - 법(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2 : 13개
 - 영(제24조제5항 관련) 별표 3 : 81개
 - 규칙(제10조제4항 관련) 별표 1 : 3개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1)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영 제27조제2항)

■ 변경등록 신청사유

- 합병등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등(법 제7조)
-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등(법 제23조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명칭이 변경된 경우 (영 제27조제2항제3호)
- 외국투자자의 상호 및 명칭,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투자방법,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등 영 제6조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

■ 변경등록 신청방법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기관(수탁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원본

(2)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의 처분(양도, 대여, 신고된 목적 외의 사용시) (법 제22조제1항)

■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전신고

- 신고접수기관 : 사후관리기관(외국인투자신고 접수기관)
- 제출서류 : 자본재처분신고서

■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신고 불필요(영 제29조 제1항)

- 특별한 신고 없이 자유로이 처분 가능

(3)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
 - 완전개방업종, 부분제한업종, 미개방업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신고 불필요)
-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영 제29조제2항제1호)
 - 추가사업영위가 자유로운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완전개방업종을 추가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 부분제한업종을 그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영위하는 경우
 - 추가사업영위가 금지되는 경우
 - 부분제한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경우
 - 미개방업종을 추가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국내기업 주식의 취득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
 - 다른 모든 국내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 가능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영 제29조제2항제2호)
 -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이 자유로운 경우
 - 완전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부분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미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이 금지되는 경우
 - 부분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 미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5)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신고(법 제23조제1항, 영 제30조제1항)

■ 신고사유

-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자본감소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 신고시기

- 주식등의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본감소의 경우 상법 제43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주식 또는 지분 등의 양도 또는 감소 신고서 2부
- 양도계약서, 자본감소 변경등기서 등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신규 외국인투자가인 경우)
 - ※ 수탁기관장은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영 제30조4항)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서 2부 - 양도 계약서, 자본감소 변경등기부등본 등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신규 외국인투자자인 경우) ○ 신고기관 : 사후관리기관(수탁기관) ○ 처리기간 : 즉시처리(신고필증 교부) ○ 신고기한 :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후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 신청기관 : 사후관리기관(수탁기관) ○ 처리기간 : 1일(등록증 교부) ○ 신고기한 : 변경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가. 조세지원

(1) 조세지원제도의 의의

-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2) 조세감면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 5장)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외 사업의 경우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술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 등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산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의 조세감면 요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산업육성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 항만법 및 항공법에 의한 항만(공항)시설운영사업 및 물류산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귀속시설 조성사업
 - ④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증설할 경우(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인 경우
 -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 ⑤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외국인 투자금액 합계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 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상기 ① ~ ④의 업종 또는 사업에 해당할 것
 - 상기 ① ~ ④의 해당 시설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 ※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 봄(조특법시행령116조의2제4항)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종전 외국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5호)
 - 대상사업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및 물류업
 - 감면요건 및 규모
 -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2호)
 - 대상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의료기관, 연구개발시설
 - 감면요건 및 규모
 -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과 관광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및 의료기관은 미화 5백만불 이상
 - 연구개발시설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 경우로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3호)

- 대상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역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수출업, 제조업, 하역업, 운송업, 보관업, 전시업 등
- 감면요건 및 규모
 -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수출업, 제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하역업, 운송업 등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6호)

- 대상사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등
- 감면요건 및 규모
 -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연구 및 개발업과 물류업은 미화 5백만불 이상, 나머지 업종은 미화 1천만불 이상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3호)

- 감면대상 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 감면요건 및 규모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4호)
 - 감면대상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 감면요건 및 규모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7호)
 - 감면대상 사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 감면요건 및 규모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 기존주식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9항)
 - * 국공유재산 임대, 행정지원서비스 제공 등 기타지원제도는 적용됨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출자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 대한민국법인(또는 국민)이 외국법인(또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다음의 주식소유지분은 조세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 영 제116조의2제11항 내지 13항)

※ 간접소유비율 계산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함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함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 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
- 장기차관 : 장기차관은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조세감면 세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영 제116조의2)

■ 법인세·소득세

- 감면세액범위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총산출세액×감면대상 사업 과세표준/총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 감면기간 및 비율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외측법제18조제1항제2호) 입주기업은 감면

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나머지 감면대상 외국인투자 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단,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 감면세액범위
 - 산출 배당소득세에서 전체사업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감면기간 및 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감면과 동일

■ 토지 · 건물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 감면세액범위
 - 산출세액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 감면기간 및 비율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외축법제18조제1항제2호) 입주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외축법제18조제1항제2호) 입주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투자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름

■ 재산세

- 공제대상금액
 -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공제기간 및 비율
 - 상기 취득세, 등록세 감면내용과 유사

- 자본재 수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공제대상사업자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외측법제18조제1항제2호) 입주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 기타 나머지 외국인투자 감면기업의 자본재 수입 시는 관세만 감면

- 증자의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영 제116조의6)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관세포함)은 최초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조세감면규정을 준용.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한 날로 함
 -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의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존주식의 감면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
 - 단,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순증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
 -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후 7년 이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 외국인투자신고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업양수 방식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이 단축 및 축소됨
 - 법인세 및 소득세 :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간은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도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 감면내용 변경신청 :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02-2150-2623)
- 외국환은행 및 Invest KOREA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조세감면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은 외국인투자신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조세감면 신청분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기획재정부로 이송

■ 신청시의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 2부를 제출
 -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서
 -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서비스의 활용범위를 기재한 서류
 -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함)
 -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표시할 것
 - 공정별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표시할 것
 - 경제적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 비교한 성능, 품질·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기타자료
 - 공업소유권, 인증서·시험합격서, 기술개발 관련자료, 제3국 공여실적,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자료,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 * 조세감면여부 사전확인의 경우에도 상기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 **감면여부의 결정 및 통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 처리기간 : 조세감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 관계부처 협의
 - 당해 사업의 주무부장관 : 고도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협의
-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
 - ※ 단,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협의 생략가능
- 기획재정부장관이 비감면대상 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당해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20일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 Invest KOREA, 수탁기관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결정내용을 통보

■ **감면세액의 추정(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5)**

- 감면사업 영위에 따른 법인세 등 추정사유
 - 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경우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내용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에 따른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자본재 수입에 따른 관세 등 추정사유
 - 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경우
 - 출자목적물이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 외국투자가가 투자에 따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감면사업 영위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추징사유
 - 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경우
 - 조세감면 당시보다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
 -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에 따른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감면된 세액의 추징기간
 - 법인세 등 : 감면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감면된 세액. 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대한민국국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3년간 감면된 세액
 - 관세 : 감면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감면된 세액
 - 취득세 등 지방세 :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감소된 비율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 감면세액 추징예외
 -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된 경우
 - 수입된 자본재가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불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의 공개에 따라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 기타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 면제대상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Royalty)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면제

- 면제기간 :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 **신청기한** :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신청기한 경과후 신청시 : 잔여 감면 기간에 한하여 조세 면제)
- **신청기관** : 당해 기술의 주무부장관
- **처리기간** : 조세면제신청일부터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20일 연장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 기술도입계약서 사본 및 기술개발관련자금 및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 기타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참고】 현행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 신고대상 : 기술도입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다음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로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지상지원설비 포함)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
 - 방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
- 신고기관 : 당해 기술의 주무부장관
- 처리기간 : 즉시(다만, 신고와 동시에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7일)
- 발효기한 : 당해 기술도입계약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다만 당해기술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나.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1) 국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법 제13조, 영 제19조)

■ 임대기간 및 임대요율

- 임대기간은 50년 범위내
 -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
- 임대료는 토지 등의 가액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임대료의 감면

-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단지형),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지방·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
-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 100% 감면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미화 100만달러 이상으로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 75% 감면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미화 5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SOC 확충·산업구조의 조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
 - 50% 감면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토지

(2) 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법 제13조, 영 제19조)

■ 임대기간

- 공유재산과 같이 50년 범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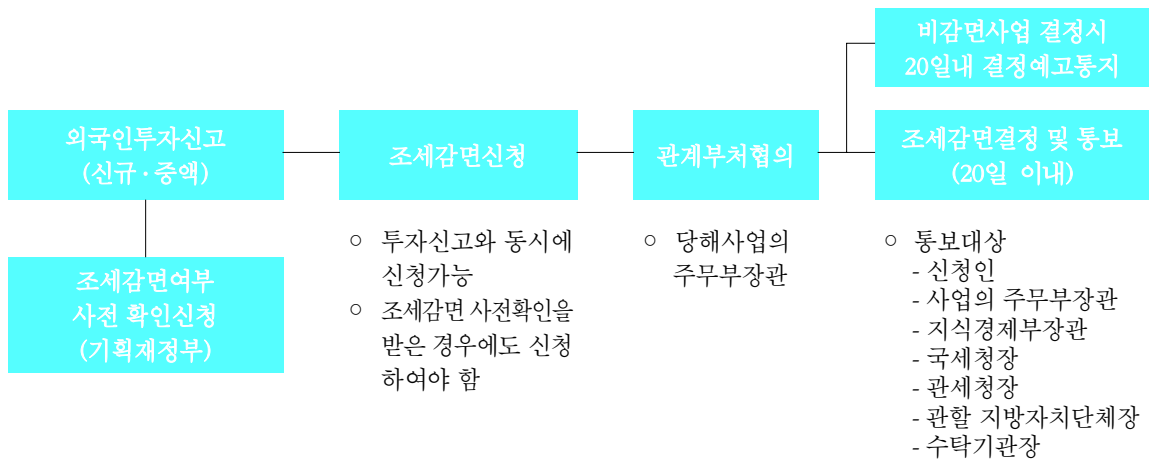
■ 임대료 감면대상 및 비율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사업·감면율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 상기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동일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는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단,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 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50%,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4)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절차

<조세감면절차도>



■ 조세감면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 신청기한
 -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 중액투자 : 중액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 ※ 신청기한 경과후 신청시 : 잔여 감면기간에 한하여 조세 감면
-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7항)
 -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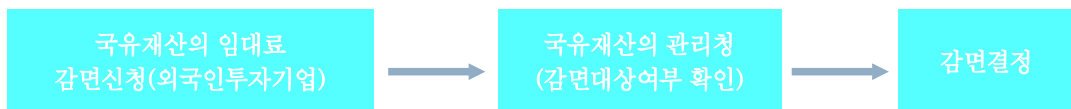
(3) 국·공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임대료감면 신청절차(법 제13조, 영 제19조)

■ 매각 및 임대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
- 임대기간은 50년까지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혹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임대 토지 위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토지 등의 매각에 있어서 매입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음(적용이자율 4% 이내)
 - 국유재산 :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 연기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 공유재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 임대료감면 신청절차

- 국유재산의 임대감면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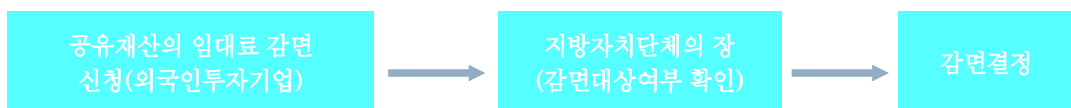


※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 시설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료감면 적용시점: 감면결정일 익월부터 적용

- 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신청



다. 관세지원

(1) 관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면제대상 세목 :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 면제대상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 한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자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림, 수산업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연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함
- 적용기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신청기관 : 수입신고 세관장
- 신청시 구비서류 : 관세 등 면제신청서 1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
 - 법인세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조세감면결정 공문) 1부
 - 출자목적물로 도입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투자신고서) 1부
 -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2) 수입통관상 특례

■ 자본재도입물품명세

- 확인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경우

■ 자본재도입물품명세 확인(법 제29조, 영 제38조제2항, 규칙 제23조)

- 도입자본재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본재의 수량, 규격, 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외국환은행장 또는 KOTRA 사장(Invest KOREA에 신청)에게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시 물품매도확약서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통관절차

- 도입된 자본재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관세 등 면제신청서

- 조세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 수단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 기타 통관시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예 : 송품장, B/L, 가격신고서, 통합공고상의 구비서류 등)

*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라도 반드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등 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음

*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자본재 도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3) 자본재 출자에 관한 특례

- **현물출자완료확인(법 제30조제3항, 영 제39조, 규칙 제24조)**
 -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자본재(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동 자본재 통관 후 Invest KOREA(관세청 파견관)에 현물출자완료확인을 받으면 됨
 - 외국투자자가 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봄
 -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은 자본재가 여러번 분할하여 통관되는 경우에는 동 자본재가 최종적으로 통관된 후에 하여야 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사본이며, 즉시 처리됨
- **현물출자완료 확인 통보(영 제39조)**
 - 관세청장은 현물출자완료확인 후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자본등재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 제21조, 영 제27조)**
 -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의 목적물로서의 자본재도입이 완료되면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받아 관할법원에 자본등재 또는 법인등기를 하고, 외국환은행장 또는 KOTRA 사장(Invest KOREA에 신청)에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여야 함

(4) 자본재 사후관리

-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법 제22조, 영 제29조)**
 -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국환은행장 또는 KOTRA 사장에게 신고하여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
 - 다만, 관세면제를 받고 도입한 자본재로서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3조)

■ 관세가 추정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영 제116조의8)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폐업된 경우에는 말소일 또는 폐업일전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정함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정함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관세등의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중 주식양도비율 및 경과월수 등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정함
- 추정관세액 계산시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가치감소에 따른 가격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

■ 관세추징이 면제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5항, 영 제116조의10)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기 타

■ 주식배당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법상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 감정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로 투자되는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

5.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법 제1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 -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제3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 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건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가. 현금지원 대상(법 제14조의2)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한함)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과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 ※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업종 : 섬유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별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과학기술분야의 대한민국법인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기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그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 현금지원과 재정지원(주로 입지지원)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양 지원제도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 가능
- 현금지원의 신청 및 절차(영 제20조의3)
 -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총투자금액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과급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상기사항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나. 현금지원 용도(영 제20조의2제1항)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6.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영 제21조의2)

가. 지정목적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나. 대상자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직원
 - 파견관
 - 외국인투자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이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함

다. 지정권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라. 주요 수행업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
- 법 제9조·제13조·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제시
- 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7. 외국인투자지역

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구 분	지 정 기 준
신규	단지가 조성되어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시적 입주수요가 제시된 상태(MOU이상)
기존지역 확장	기지정면적의 3/4 이상이 입주계약 체결 확장대상 단지가 조성되어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시적 입주수요가 제시된 상태(MOU이상)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일정 기준(투자규모 및 투자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는 지역

업 종	지 정 기 준
제조업	<p>《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3천만달러 이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p>(*산업지원서비스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p>

업종	지정기준
관광업	<p>《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천만달러 이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 산업지원서비스업(*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외) <p>※ 관광진흥법상 사업승인후 투자지역 지정 신청 가능</p>
물류업 및 SOC	<p>《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달러 이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지 조성·운영 ○ 항만시설 운영사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물류산업 ○ 공항시설 운영사업, 공항구역 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귀속사업에 한함)
연구·개발	<p>《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백만달러 이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업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증설하는 경우 -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채경부고시 제2006-4호) 별표1 제2편 제11-4호에 따른 물류업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규정 제22조의2(산업지원서비스업의 분류기준)에서 규정

※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외국인투자금액에 불산입

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개발·관리(법 제18조)

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충족확인

개 별 형		단 지 형	
제조업	외투금액 USD 3천만불 이상	신규	산업단지(국가또는지방)가 개발되어 즉시 공장 착공이 가능하고 명시적 외국인투자수요(MOU 이상)가 있어야 함
관광업	외투금액 USD 2천만불 이상		
물류업	외투금액 USD 1천만불 이상	기존	기지정면적의 3/4 이상이 입주계약이 체결되고 확장대상 단지가 구성되어 즉시 입주가능한 상태
R&D	외투금액 USD 2백만불 이상		



② 투자유치 및 투자지역 지정 실무협의 및 지정계획 작성

- 조세감면은 일정요건 충족시 감면신청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
- 입지 및 재정지원은 협상을 통해 결정

개 별 형	단 지 형
- 투자유치 단계부터 인센티브 지원에 대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투자기업과 국가간에 지원에 대한 합의	- 지자체와 국가간 부지매입 분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정이후 부지매입 계약은 이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임



③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심의요청 (지자체→지식경제부)



④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상정

- 위원장 : 지식경제부 차관
- 위 원 : 관계부처 1급 공무원, 관계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IK단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⑤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위원회→지자체)

- 기 능 : 최고의결기구
- 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위 원 : 9개 중앙부처 장관 및 해당 지자체 장



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 (지자체장)

- 외국인투자지역 명칭·위치 및 면적
- 개발 및 관리방법 등

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황

(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29개소)

(07년 12월말 현재)

구 분	위 치	면 적 (천㎡)	지 정 최 초	투자액(백만\$)		고용(명)	사업분야
				총투자	FDI		
태양유전	경남 사천	171.6	'99.10.28	209	52	2,572	세라믹콘텐서
천안영상문화	충남 천안	493.3	'99.11.2	46	36	1,000	애니메이션
J.S.T	경남 양산	20.2	'00.3.3	32	32	300	전기전자부품
BASF	전남 여수 전북 군산 울산	671.2	'00.12.30 '01.1.12 -	414	231	303	석유화학제품
코리아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190.4	'00.12.30	242	66	531	자동차안전유리
동부전자	충북 음성	137.2	'01.6.29	750	240	1,427	반도체웨이퍼
스미토모	경기 평택(포승)	252.3	'03.12.29	483	155	1,471	LCD 컬러필터, 편광필름
S-LCD	충남 아산	123.4	'04. 5.25	3,746	1,823	4,300	LCD-TV 패널
Asahi 초자	경북 구미	300.7	'04.12.21	294	180	503	LCD 유리기관
MCC Logistics	부산 감천	66.2	'04.12.23	20	10	115	물류
NH테크노그라스코리아	경기 평택(현곡)	88.5	'04.12.30	148	64	63	LCD 유리기관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현곡)	18.6	'04.12.30	52	52	71	LCD Photo Mask
LINTEC코리아	충북 청원(오창)	49.6	'04.12.31	83	40	160	반도체가공소재
Air Liquide코리아	전남 여수	15.2	'04.12.27	109	59	45	산업용 가스
Toray 새한	경북 구미	192.8	'04.12.27	293	100	399	화학소재
Schott	충북 청원(오창)	310.1	'05.5.27	505	328	955	LCD 유리기관
DGA	경북 구미	74.6	'05.12.5	78	31	92	PDP 유리기관
BOC	경기 용인	24.4	'05.11.28	100	100	30	산업용 가스
Praxair	경기 용인	16.6	'05.11.28	54	31	19	산업용 가스
WTA	경기 김포	295.0	'06.3.29	220	220	57	헬리콥터 성능개량
한옥테크노글라스	경북 구미	105.8	'06.5.8	68	30	100	PDP 유리기관
에프로덕츠	울산시	23.7	'06.12.21	60	60	68	산업용 가스
라파즈	충남 당진군	17.8	'06.12.21	30	30	42	석고보드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주)	경북 구미	62.3	'06.12.21	100	45	200	PDP용 유리기관
대산MMA	충남 서산	62.9	'07.4.23	75	37.5	52	PMMA,인조대리석
스탠포드호텔	서울	3.4	07.4.23	42	20	114	호텔업
여수오션리조트	전남 여수	116	'07.7.31	335	198	608	호텔,종합휴양업
태영호라이즌	울산시	43.6	'07.11.30	66	10.4	58	항만 물류시설
한국쓰리엠	전남 나주	5.5	'07.12.27	55	55	71	미세유리구슬
합 계		3,952.9		8,709	4,335.9	15,726	

(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2개소)

(07년 12월말 현재)

구 분	지정일	면 적 (천㎡)	입주면적 (천㎡)	입주율	임대료 (원/㎡-년)	입 주 기업수	고 용 원	FDI (백만불)
충남 천안	'94.10.13	491.4	491.4	100.0	1,740	44	3,614	257
광주 평동	'94.10.13 '01.08.17	959.2	893.0	93.1	600	56	2,279	156
전남 대불	'98. 8.29 '01.08.17	1,614.4	1,540.6	95.4	348	43	2,155	82
경남 사천	'01. 8.17 '02.11.06 '03.11.28	495.9	292.3	58.9	1,152	11	401	97
충북 오창	'02.11.06 '03.11.28	446.3	274.3	61.5	1,344	6	1,214	108
경북 구미	'02.11.06 '04.06.28 '07.07.31	446.0	196.8	44.1	1,092	7	973	57
경기 장안1	'04. 9.30	418.1	293.4	70.2	2,040	12	829	119
충남 인주	'04.12.21	164.7	143.6	87.2	1,272	6	113	21
경기 당동	'05. 9.12	239.4	56.1	23.4	4,589	4	203	34
부산 지사	'05.11.30	298.1	292.6	98.1	1,810	12	288	48
경기 장안2	06.12.21	379.6	32	8.4	3,705	1	-	-
충북 오송	'07.07.31	301.7	-	-	-	-	-	-
합 계		6,254.8	4,506.1	72.0		202	12,069	979

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구 분	개 별 형	단 지 형	
조세 감면	감면대상 투자기준	제조업 : 3,000만불 이상 관광업 : 2,000만불 이상 물류업 : 1,000만불 이상 연구시설 : 200만불 이상	제조업 : 1,000만불 이상 물류업 : 500만불 이상
	감면 대상	국세(법인세, 소득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국세(법인세, 소득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간	최초 5년 100%, 향후 2년 50% * 지방세는 15년까지 조례로 연장가능	최초 3년 100%, 향후 2년 50% * 지방세는 15년까지 조례로 연장가능
입지 지원	임대용지 매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 매입비 분담 : - 수도권 : 국가 40%, 지자체 60% - 비수도권 : 국가 75%, 지자체 25% 	
	임대료 감면	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수반사업 & 100만불 이상 : 100% 감면 ○ 일반제조업 & 500만불 이상 : 75% 감면
	분양가 차액보조	산업단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분양하는 경우 차액보조 (분담율은 임대용지 지원과 동일)	
재정 지원	현금지원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 등 투자자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공장건축, 시설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현금으로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의 신규고용후 교육훈련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10만~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고용 보조금	20명 이상의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최대 6개월간 1인당 10만~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타 법률 적용배제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시 허가면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기업체 우선고용의무 면제		

※ 참고 : 주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비교표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 항만, 물류형	
법적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 목적	○ 외자유치		○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육성	○ 외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정 위치	○ 산업단지내	○ 제한없음	○ 항만, 공항의 주변지역, 산업단지	○ 항만, 공항, 유통단지, 화물터미널등	○ 국제공·항만주변 지역
지역 특성	○ 임대단지운영원칙 - 5만~50만평	○ 개별사업장 단위	○ 비관세지역		○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지정 권자	○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지식경제부장관 *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입주 자격	○ 외투기업 ○ 제조업, 물류업 등 (외투자분 30%이상)	○ 외투기업 ○ 제조업:3천만\$이상 관광업:2천만\$이상 물류업:1천만\$이상 연구개발:2백만\$이상	○ 외투기업·내국기업 ○ 제조업 - 수출주목적 내국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물류업, 무역업 등		○ 외투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조세 감면 요건	○ 제조업: 1천만\$이상 ○ 물류업: 5백만\$이상	○ 지정요건과 동일	○ 제조업: 1천만\$이상 ○ 물류업: 5백만\$이상 ※ 마산, 익산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간주	○ 제조업: 1천만\$이상 ○ 물류업: 5백만\$이상	○ 제조업: 1천만\$이상 ○ 관광업: 1천만\$이상 ○ 물류업: 5백만\$이상
조세 감면	○ 법인세, 소득세: 5년 ○ 지방세: 8~15년	○ 법인세, 소득세: 7년 ○ 지방세: 8~15년	○ 법인세, 소득세: 5년 ○ 지방세: 8~15년		○ 법인세, 소득세: 5년 ○ 지방세: 8~15년
관세 부과	○ 자본재 3년간 면제		○ 관세유보		○ 자본재 3년간 면제
임대료	○ 부지가액 10/1,000 수준(협의후 결정)	○ 부지가액 10/1,000이상	○ 부지가액 10/1,000 수준 (협의후 결정)		○ 부지가액 10/1,000수준
임대료 감면	○ 고도기술: 100% (1백만\$이상) ○ 일반제조: 75% (5백만\$이상)	○ 100% 감면	○ 외투자지역과 동일 (외투기업 100% 감면) - 고도기술: 100% (1백만\$이상) - 일반제조: 100% (1천만\$이상)		○ 감면을 미결정 (관리청이 결정)
지원분담	○ 수도권: 국비 40% ○ 비수도권: 국비 75%		○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 분담비율 결정		○ 분담율 미결정
비고	○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04.12.31)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04.6.23)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04.3.22)		

외국인직접투자관련 서식

【외국인투자촉진법】

■ 신주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제1호서식]	84
■ 신주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서 [제2호서식]	88
■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허가신청서 [제3호서식]	90
■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내용변경 신고서/허가신청서 [제4호서식]	92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신고서 [제5호서식]	94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변경신고서 [제6호서식]	96
■ 국유재산임대료 감면신청서 [제11호서식]	98
■ 현금지원신청서 [제11호의2서식]	99
■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제12호서식]	101
■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제13호서식]	102
■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제14호서식]	103
■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제15호서식]	104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제16호서식]	105
■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 신청서 [제16호의2서식]	106
■ 관광사업등록 신청서 [제16호의3서식]	107
■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제16호의4서식]	108
■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제16호의5서식]	109
■ 공장등록/부분등록/등록변경/건축물등록 신청서 [제16호의6서식]	110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제17호서식]	111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증명서 [제18호서식]	113
■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 신청서 [제18호의2서식]	114
■ 자본채 처분 신고서 [제19호서식]	116
■ 과세표준신고시 추가보고서 제출양식 [제20호서식]	117
■ 외국인투자기업이 법22조제1항의 규정위배 여부를 조사할 경우 제출양식 [제21호서식]	118
■ 주식등의 양도/감소 신고서 [제22호서식]	119

-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제23호서식] 121
- 자본채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신청서 [제24호서식] 123
-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 [제25호서식] 124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감면신청서/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 [제80호서식] 125
-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서 [제81호서식] 127
- 사업개시일 신고서 [제82호서식] 129
-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제83호서식] 13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0.26)

(앞 쪽)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외국 투자자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③국적	
	②주소(영문)		
내국 투자자	④상호 또는 명칭	(전화:)	
외국인 투자기업	⑤상호 또는 명칭	국문 : 영문 :	⑥자본금 (출연금) 취득(출연)전 취득(출연)후
	⑦사업자등록번호(본사)		
	⑧주소	본사	(전화:)
		공장 또는 사업장	(전화:)
	⑨하려는 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분류	(신고접수기관 기재란)		
⑩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 원(USD 상당), %	
⑪투자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설립(□단독, □합작)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단독, □합작) <input type="checkbox"/> 유상증자(□내국법인, □외투기업)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출연(□단독, □합작)		⑫투자목적 <input type="checkbox"/> 공장설립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설립 <input type="checkbox"/> 인수합병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에 출연
	⑬투자방법	현금 원(USD 상당) 자본재 원(USD 상당) 주식 원(USD 상당) 부동산 원(USD 상당) 채권 원(USD 상당)	
⑭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	1주(좌)당 취득가액
	수량	액면총액	취득총액
⑮금번취득후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액면가액 : 원	%
		취득가액 :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⑮			
※ 유의사항: 이 신고필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출자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사본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간
	수탁기관장

```

    graph TD
      A[신고서작성] --> B[접수]
      B --> C[검토·확인]
      C --> D[신고필증교부]
      D --> E[수령]
    
```

[Form No. 1]

(Front)

Acquisition of Newly Issued Stock by a Foreign Investor		Foreign Investment	
		Term of Completion	
		Immediate	
Foreign Investor	①Name ②Address	③Nationality	
Domestic Investor	④Name (Telephone:)		
Foreign-Invested Enterprise	⑤Name	Korean:	⑥Capital (Contribution) Before Acquisition(Contribution): Won After Acquisition(Contribution): Won
		English:	
	⑦Business Registration No. (Headquarters)		Headquarters (Telephone:)
	⑧Address		Factory(Place of Business) (Telephone:)
	⑨Intended Business ※Sub-Class of 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for the Delegated Agency's use only. Please do not write.)
⑩Amount and Percentage of Present Foreign Investment		Acquisition Price: Won (USD), %	
⑪Type of Investment	<input type="checkbox"/> Establishing Corporation(<input type="checkbox"/> sole <input type="checkbox"/> joint) <input type="checkbox"/> Establishing Unincorporated Private Enterprise(<input type="checkbox"/> sole <input type="checkbox"/> joint) <input type="checkbox"/> Purchase of Newly Issued Stocks(<input type="checkbox"/> domestic company <input type="checkbox"/> foreign-invested enterprise) <input type="checkbox"/> Contribution to Non-Profit Corporation(<input type="checkbox"/> sole <input type="checkbox"/> joint)		⑫Purpose of Investment <input type="checkbox"/> Establishing New Factory <input type="checkbox"/> Establishing Place of Business <input type="checkbox"/> Merger or Acquisition <input type="checkbox"/> Contribution to Non-Profit Corporation
	⑬Form of Investment		
		Cash Amount	Won (USD)
		Capital in Kind	Won (USD)
		Stock	Won (USD)
		Real Estate	Won (USD)
		Bond	Won (USD)
⑭Details of Stock(Shares) to be Acquired	Type	Par Value per Stock(Share)	Acquisition Price per Stock(Share)
	Quantity	Total Par Value of All Stocks	Total Acquisition Price
⑮Amount and Percentage of Foreign Investment After Acquisition		Par Value of Stock: Won Acquisition Price: Won (USD) %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input type="checkbox"/> Article 5, Paragraph 1 / <input type="checkbox"/> Article 8-2,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For the Delegated Authority		Year Month Day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Signature or Seal) (Telephone:)
For the Applicant Notification No.: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Year Month Day Delegated Authority:			
※ This notification does not confirm the arrival of the investment. When any authorization, permission or notification is required by another law, the applicant must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under that law.			

210 mm × 297 mm[Standard Paper 60 g/m² (Recycled Paper)]

(Back)

※ Required Documents (Copies acceptable unless otherwise stated.)	Processing Fee
	Exempt
1. Proof of the monetary valu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sued by a technology evaluation authority as stipulated in Article 39,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7, Sub-Item "R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2. Proof of the assets remaining after liquidation of a branch or representative office.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7, Sub-Item "M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3. Proof of the amount the applicant has repaid against a domestic or overseas loan.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7, Sub-Item "B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4. Proof that the stocks in question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rticle 2, Paragraph 9, of the Enforcement Decree.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7, Sub-Item "S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5. Proof that the investor has duly registered all capital transactions involving the real estate to be invested,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Foreign Exchange Law.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7, Sub-Item "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6. Any contract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Article 2, Paragraph 2,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the above-mentioned Item.) 7. Proof of the amount received through the sale of stock (shares) or real estate.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8. Proof that the non-profit corporation in question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rticle 2, Paragraph 5, all Items, of the Enforcement Decree.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4, Sub-Item "D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9. Proof that the non-profit corporation in question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rticle 2, Paragraph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4, Sub-Item "R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10. Proof of the foreign investor's nationality. (Only necessary the first time the foreign investor makes an investment.) The notification procedure will proceed as shown in the diagram below.	
Applicant	Authority Delegated Authority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Notification</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Acceptance</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Review and Confirmation</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Receipt</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Issuance of Certification</div>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0.26)]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이미 신고된 외국인 투자 내용	①신고일	년 월 일		
	②외국인투자기업명			
	외국투자가	③상호또는명칭		④국적
	⑤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		
	⑥투자방법			
	⑦하려는 사업			
	⑧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변경 내용	⑨이미 신고된 내용		⑩변경 후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⑩				
※ 유의사항: 이 신고필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4.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Form No. 2]

Changes to Information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Newly Issued Stock by Foreign Investors				Foreign Investment	
				Term of Completion	
				Immediate	
Details of Foreign Investment Prior to Change	①Date of Notification	Year Month Day			
	②Name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				
	Foreign Investor	③Name		④Nationality	
	⑤Amount and Percentage of Foreign Investment	Won (USD), %			
	⑥Form of Investment				
	⑦Intended Business				
	⑧Addres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				
	Change to Information	⑨ Information Prior to Change			⑩ Information After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input type="checkbox"/> Article 5, Paragraph 1 / <input type="checkbox"/> Article 8-2,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div style="text-align: right;">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div> For the Delegated Authority					
For the Applicant Notification No.: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div style="text-align: right;"> Year Month Day Delegated Authority: </div> ※ This notification does not confirm the arrival of the investment. When any authorization, permission or notification is required by another law, the applicant must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under that law.					
※ Required Documents (Copies acceptable unless otherwise stated.) 1. Any contract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Article 2, Paragraph 2,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2,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bove-mentioned Act.) 2. Proof that the non-profit corporation in question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rticle 2, Paragraph 5, all Items, of the Enforcement Decree.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4, Sub-Item "D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3. Proof that the non-profit corporation in question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rticle 2, Paragraph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4, Sub-Item "R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4. Proof of the foreign party's nationality (only necessary if the information has changed).				Processing Fee	
				Exempt	

210 mm × 297 mm(Standard Paper 60 g/m² (Recycled Paper))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0.26>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주식 등 발행 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공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하고 있는 사업	⑥자본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세 분 류		[신고(신청)접수기관 기재란]	
⑦주식(지분)취득자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영문) 주 소	(전화번호 :)		⑧국적
⑨주식(지분)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⑩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금액: 원(USD 상당), %		
⑪취득할주식 (지분)의 내용	종 류	1주(좌)당 액 면 가	1주(좌)당 취 득 가	
	수 량	액면총액	취득총액	
⑫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액면가액 : 원	%	
		취득가액 :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또는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input type="checkbox"/> 위의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인				
※ 유의사항: 이 신고필증(허가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 수 료
첨부서류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사본 1부 2.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출자하는 주식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금액·교환비율 등 교환조건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사본 각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4. 주식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Form No. 3]

Foreign Investment by Acquisition of Outstanding Stock		<input type="checkbox"/> Notification Form <input type="checkbox"/>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Term of Completion	
				Notification: Immediate Authorization: 15 days	
Stock-Issuing Enterprise	①Name			②Business Registration No.	
	③Address	(Telephone :)			
	④Factory(Business) Location	(Telephone :)			
	⑤Present Business			⑥Capital	
	* Sub-Class of 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For Delegated Agency's Use Only. Please Do Not Write.))			
⑦Acquirer of Stock or Shares(Foreign Investor)		Name			⑧ Nationality
		Address	(Telephone :)		
⑨Seller of Stock or Shares		Name	(Telephone :)		
⑩Amount and Percentage of Present Foreign Investment		Acquisition Price: Won(USD), %			
⑪Details of Stock(Shares) to be Acquired	Type		Par Value per Stock (Share)		Acquisition Price per Stock (Share)
	Quantity		Total Par Value		Total Acquisition Amount
⑫Amount and Percentage of Foreign Investment After Acquisition		Par Value of Stock: Won			%
		Acquisition Price: Won (US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6, Paragraphs 1 and 3,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Applicant Year Month Day (Signature or Seal)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For the Delegated Authority (or the Minister of Knowledge & Economy)					
For the Applicant Notification (Authorization) No.: <input type="checkbox"/>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input type="checkbox"/> The above is authorized. Authorization Conditions: Year Month Day					
Delegated Authority (or the Minister of Knowledge & Economy)					Official Seal
* This notification (or authorization) does not confirm the arrival of the investment. When any authorization, permission or notification is required by another law, the applicant must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under that law.					
Required Documents (Copies acceptable unless otherwise stated.) 1. The document required under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 3, 6 and 7 of the Working Rules. 2. In the event that the stock is being transferred to more than two parties, proof of the transferees' relationship to each other. 3. Any contract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Article 2, Paragraph 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stipula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xchange, including the value and rate of exchange of the stocks to be invested and acquired. (Only required in the event of the investment and acquisition of stocks under Article 2, Paragraph 1, Item 7, Sub-Item "S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4. Proof of the foreign investor's nationality. (Not required in cases where an existing foreign investor intends to acquire additional stocks in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Processing Fee Exempt	

210 mm × 297 mm(Standard Paper 60 g/m² (Recycled Paper))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0.26>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①주식취득신고(허가)일	년 월 일	
②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③주식등 발행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주 소	
변 경 내 용	④이미 신고(허가)된 내용	⑤변경 후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또는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번호 : <input type="checkbox"/> 위의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또는 지식경제부장관) ㉠		
※ 유의사항: 이 신고필증(허가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2.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수인이 변경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3. 주식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Form No. 4]

Ch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Outstanding Stock by Foreign Investors		<input type="checkbox"/> Notification Form		Term of Completion
		<input type="checkbox"/>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Notification : Immediate Authorization Application : 15days
①Date of Notification(Authorization) of stock Acquisition		Year	Month	Day
②Name of Foreign Investor		(Telephone : -)		
③Foreign-Invested Enterprise	Name			
	Address	(Telephone : -)		
Change to Information	④Information Prior to Change		⑤Content After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6, Paragraphs 1 and 3,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No. :)
For the Delegated Authority(or The Minister of Knowledge & Economy)				
For the Applicant				
Notification(Authorization) No. :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The above is authorized).				
		Year	Month	Day
Delegated Authority(or The Minister of Knowledge & Economy)				Official Seal
※ This notification(or authorization) does not confirm the arrival of the investment. When any authorization, permission or notification is required by another law, the applicant must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under that law.				
Required Documents(Copies acceptable unless otherwise stated.) 1. Any contract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Article 2, Paragraph 2,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the above-mentioned Item.) 2. In the event that the stock is being transferred to more than two parties, proof of the transferees' relationship to each other. 3. Proof of the foreign party's nationality. (Only necessary if this information has changed).			Processing Fee	
			Exempt	

210mm×297mm[Standard Paper 60g/m²(Recycled Paper)]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0.26>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외국인 투자 기업	①성명 또는 명칭		국문 : 영문 :	②사업자등록번호(본사)		취득전
	③주소	본사	(전화 :)	④자 본 금		
		공장 (사업장)	(전화 :)			
	⑤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신고접수기관 기재란)			
외국 투자가	⑥상호 또는 명칭		⑦국적			
	⑧주소		(Tel :)			
취득한 주식(지분)의 내역	⑨종류	⑩수량	⑪1주(좌)당 액면가	⑫액면총액	⑬취득가액	⑭취득총액
⑮취득사유	<input type="checkbox"/> 전환사채 <input type="checkbox"/> 신주인수권 <input type="checkbox"/> 무상증자 <input type="checkbox"/> 배당 <input type="checkbox"/> 상속 또는 유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⑯취득후 외국인투자가 소유주식 (지분)의 수량, 금액 및 비율		주(좌)	액면가액 : 원		%	
			취득금액 :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⑰						
※ 유의사항: 이 신고필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기존의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Form No. 5]

Notification of Acquisition of Stock or Shares						Term of Completion	
						Immediate	
Foreign Invested Enterprise	①Name	Korean :			②Business Registration No. (Head Quarters)		
		English :					
	③Address	Head Quarters	(Tel :)		④Capital	Before Acquisition : Won	
		Factory (Business)	(Tel :)			After Acquisition : Won	
	⑤Present Business						
※ Sub-Class of 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For Delegated Agency's use only. Please do not write.)				
Foreign Investor	⑥Name			⑦Nationality			
	⑧Address			(Telephone:)			
Acquired Stock(Shares)	⑨Type	⑩Quantity	⑪Par Value per Stock	⑫Total Par Value	⑬Acquisition Price per Stock	⑭Total Acquisition Price	
⑮Basis of Acquisition	<input type="checkbox"/> Convertible Bonds <input type="checkbox"/> Subscription Rights <input type="checkbox"/> Bonus Issue <input type="checkbox"/> Dividend <input type="checkbox"/> Inheritance or Bequest <input type="checkbox"/> Other()						
⑯Total Quantity, Value and Percentage of Stock (Shares) Held by Foreign Investor After Acquisition			Shares	Par Value of stocks : Won		%	
				Acquisition Price : Won (US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For the Delegated Authority			Year	Month	Day	(Signature or Seal) (Telephone:)	
For the Applicant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Notification No :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Year	Month	Day	Delegated Authority	Official Seal
※ This notification does not confirm the arrival of the investment. When any authorization, permission or notification is required by another law, the applicant must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under that law.							
Required Documents (Copies acceptable unless otherwise stated.)						Processing Fee	
						Exempt	
1. Proof of the acquisition of stock or shares. 2. Any contract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Article 2, paragraph 2,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the above-mentioned Item.) 3. Proof of the foreign investor's nationality. (Not applicable when an existing foreign investor acquires additional stock or shares in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210mm×297mm(Standard Paper 60g/m²(Recycled Paper))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10.26>

<p style="text-align: center;">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p>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차관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주소		(전화번호 :)			
차관제공자	③상호또는명칭(영문)		④국적			
	⑤주소(영문)					
차관의내용	⑥차관금액		원 (USD 상당)			
	차관조건	⑦거치기간	⑧상환기간			
		⑨연이자율	⑩기타			
⑪차관방법	현금	자본재	기타			
⑫차관용도						
⑬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	이미 신고된 내용		변경 후 내용			
<p>「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p>						
<p>수탁기관장 귀하</p> <p>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 위와 같이 신고를 필요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수탁기관장 ①</p>						
<p>※ 유의사항: 이 신고필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p>						
<p>첨부서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80%;"> <신고의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의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차관계약서 사본 1부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의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변경계약서 사본 1부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차관제공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수수료 없음 </td> </tr> </table>					<신고의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의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차관계약서 사본 1부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의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변경계약서 사본 1부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차관제공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의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의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차관계약서 사본 1부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의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변경계약서 사본 1부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차관제공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Form No.6]

Foreign Investment in the Form of a Long-Term Loan		<input type="checkbox"/> Notification <input type="checkbox"/> Change of Information		Term of Completion Immediate	
Debtor	①Name				
	②Address		(Telephone:)		
Lender	③Name		④Nationality		
	⑤Address				
Details of Loan	⑥Amount of the Loan		Won (USD)		
	Loan conditions	⑦Grace Period	⑧Repayment Schedule		
		⑨Rate of Interest	⑩Other		
⑪Type of Loan	Cash	Capital	Other		
⑫Purpose of Loan					
⑬Change to Information	Information Prior to Change		Information After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Year	Month	Day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Signature or Seal) (Telephone:)	
For the Delegated Authority					
For the applicant					
Notification No. :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Year	Month	Day	
Delegated Authority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Official Seal</div>	
※ This notification does not confirm the arrival of the investment. When any authorization, permission or notification is required by another law, the applicant must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under that law.					
Required Documents (Copies acceptable unless otherwise stated.)				Processing Fee	
				Exempt	
For Notification Only					
1. Proof of an overseas parent enterprise or enterprise which has capital affiliation with the parent enterprise.					
1-2. Proof of an foreign investor or enterprise which has capital affiliation with the foreign investor.					
2. A copy of the loan contract.					
3. Proof of the lender's nationality (unless the lender is an overseas parent enterprise).					
For Change of Information					
1. Proof of an overseas parent enterprise or enterprise which has capital affiliation with the parent enterprise.					
1-2. Proof of an foreign investor or enterprise which has capital affiliation with the foreign investor.					
2. A copy of the revised loan contract.					
3. Proof of the lender's nationality. (Only necessary if this information has changed.)					

210mm×297mm[Standard Paper 60g/m²(Recycled Paper)]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04.4.20>

(앞쪽)

현금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③국적	
	②주소(영문)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된 경우)	④상호 또는 명칭	국문 :		
		영문 :		
	⑤사업자등록번호(본사)			
	⑥주소	본사		(전화 :)
공장(또는사업장)			(전화 :)	
※⑦투자사업명				
⑧총투자금액		원(USD 상당)		
⑨외국인투자금액 및 신고(예정)일자		원(USD 상당), 년 월 일		
⑩투자에정지주소				
⑪현금지원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input type="checkbox"/>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⑫사업 또는 생산품목		
⑬현금지원신청금액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현금지원의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체결전에 실행된 투자 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⑦번 투자사업명란에는 “○○지역 공장(또는 연구시설) 신설(또는 증설)의 건“과 같이 기재합니다.

※ ⑫번 사업 또는 생산품목란에는 법 제14조의2제 1항 각호에 의하여 영위, 생산 또는 수행하는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수수료
없음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각 5부 2. 신청인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5부(증액투자의 경우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합니다)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내역 및 그 확인서 사본 5부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관련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1부 <p>※ 투자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p> <p>가.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 사업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포함합니다)</p> <p>나. 총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p> <p>다.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 방식,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p> <p>라.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p> <p>마.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p> <p>바.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을 포함합니다)</p> <p>사. 국내의 시장의 공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의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합니다)</p> <p>아. 투자기업의 10년간 사업성 전망(투자수익률, 순현재가치 등 구체적 투자수익성 자료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사업 위험 및 재무위험 등에 대한 내용과 관리계획을 포함합니다)</p> <p>자.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를 포함합니다)</p> <p>차.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임금수준별 인원, 동종업계와의 평균임금수준 비교 등을 포함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및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p> <p>카.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포함합니다)</p> <p>타.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국과 비교시 장·단점을 포함합니다)</p> <p>파.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판매 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 수행여부 등을 포함합니다)</p> <p>하. 그 밖에 현금 지원 결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4.4.20)

(앞쪽)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처리기간	
						뒤쪽참조	
허가번호 □□-□-□□□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⑤면허번호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 호	
	⑧주소						(전화)
대지조건	⑨위치						□□-□□□-□□-□□
	⑩지역			⑪지구			
	⑫지목			⑬면적(m ²)			
용도	⑭주용도			⑮부속용도			
건축물 규모	⑯건축면적		m ²	⑰연면적		m ²	
	⑱건폐율		%	⑳용적률		%	
	㉑최고높이		m				
㉒층수		지상(층), 지하(층)					
㉓구조					㉔공사종류		
㉕오수정화시설				㉖주차장	옥내	자주식 기계식 대 대 m ² m ²	
㉗주택의 형태					옥외	자주식 기계식 대 대 m ² m ²	
㉘세대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전산화 등 건축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허가 제 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오른쪽란의 의제대상중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본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 개요를 포함합니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 참조						수수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의4서식] <개정 2007.10.26>

(앞쪽)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신청인	①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성명				
	④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화 :)			
사업 계획	⑤업종				
	⑥시설설치장소				
	⑦부지면적	m ²	⑧건축물	동수 :	동, 연건축면적 : m ²
	⑨주요시설 규모·규격				
	⑩회원모집계획총인원수				
	⑪시설설치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p>「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오른쪽란의 의제대상 중 뒤쪽의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 2. 토지명세서 1부 3.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부 6.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7. 건축물의 총별면적 및 시설내용 1부 8.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부 9. 주요설비기기 및 가구 등 설치계획 1부 10.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가입 등) 1부 1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을 참조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름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의5서식] <신설 2004.4.20>

(앞쪽)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신청자	①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⑤업종				
⑥사업장소재지				
⑦시설규모				
⑧소요자금				
⑨준공예정연월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도지사 귀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 하며, 이 승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오른쪽란의 의제대상중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제주도지사 [인]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사업장소재지,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기간, 수익성, 자체자금 조달방법,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관리방법, 사업투자계획, 시설물설치계획, 토지매수계획, 지형도,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인근지역주민 고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통합영향평가서(통합영향평가서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기본도) 및 인근현황도 1부 5.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등의 권리에 대한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1부 6. 훼손지에 대한 조정 및 복구계획 1부 7. 국·공유지,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1부 8.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 9. 분야별 고용계획 1부 1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 참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의6서식] (개정 2007.10.26)

(앞쪽)

공장등록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등록변경 <input type="checkbox"/> 부분 등록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등록								처리기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전화 :)
공장현황	⑤ 공장소재지		⑥ 지목					
	⑦ 용도지역		⑧ 종업원수					
			⑨ 생산품					
	⑩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⑪ 공장부지면적 (㎡)		⑫ 제조시설면적 (㎡)		⑬ 부대시설면적 (㎡)	
⑭ 변경내용	구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 사용권(기간등)
	변경전							
	변경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등록신청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 등의 명세서 1부 ※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을 참조합니다.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본(1부)(공장건축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7.10.26)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신규등록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		처리기간
				1일
①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국문) (영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자본금	
	⑥주소	(전화번호 :)		
	⑦신고(허가)된 사업명			
	⑧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		
	⑨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			
	⑩상시고용 연구전담인력의 수			
	⑪변경등록사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신규등록의 경우> 1.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로의 입금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자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상법」 제422조에 따른 감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주식, 채권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다.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연구시설 명세서(「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없음
<변경등록의 경우>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1부				
비고: 1. *표란은 외자가 국내에 도입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⑨란과 ⑩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Form No. 17]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input type="checkbox"/> Registration <input type="checkbox"/> Change of Information		Term of Completion	
				One Day	
① Name of Foreign Investor			② Nationality		
Foreign-Invested Enterprise	③ Name		Korean :		
			English :		
	④ Business Registration No.		⑤ Capital		
	⑥ Address				
	⑦ Type of Business Previously Authorized				
	⑧ Amount and Percentage of Foreign Investment Won (USD), %				
	⑨ Legal Basis				
	⑩ Number of Regular Researchers				
⑪ Reason(s) for Change of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1, Paragraphs 1 and 2,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bove-mentioned Act,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Year	Month	Day	(Signature or Seal)
For the Delegated Authority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Required Documents (Copies acceptable unless otherwise stated.) For Registration Only				Processing Fee	
				Exempt	
<p>1. Proof that the foreign investor has purchased or deposited foreign currency. For the operator of a private enterprise, a receipt for the purchase or deposit is required with the name of the enterprise on it. (Only necessary if the investment was not made in kind.) If the foreign investor is not directly transferring or bringing in the foreign currency, proof is required that the currency was transferred or brought in by proxy.</p> <p>2. If the foreign investor is making an investment in kind, proof that the transfer of assets has been completed.</p> <p>3. An investigation report by an examiner, or a written statement by an apprais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2 of the Commercial Law.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a stock, bond, or domestic real estate investment.)</p> <p>4. The following documents pertaining to the enterprise that the applicant intends to register a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A) The corporate registry the enterprise. (In the event that the applicant is acquiring the outstanding stock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 stockholders' list or proof of a stock transfer is required. (B) Proof that the operator of a private enterprise has registered the business or received 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C) A summary of research project, The current status of regular researchers, and A list of research facilities. (Only necessar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4, Sub-Item "D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p> <p>For Change of Information 1. Documentation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the new information. 2. Registration form for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Original document required.)</p>					

In section ⑧, please specify the actual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in Korea.

In section ⑨ and ⑩, please write onl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In section ⑨, please specify the business involving high technology related to Article 116-2, Paragraph 1,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Act.

210mm×297mm[Standard Paper 60g/m²(Recycled Paper)]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4.4.20>

등록번호 제 호(년 월 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외국투자가

- 가. 상호 또는 명칭 :
- 나. 국적 :

2. 외국인투자기업

- 가. 상호 또는 명칭 :
- 나. 주소 :
- 다. 신고(허가)된 사업 :

3.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 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인)

※ 유의사항: 이 등록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입 및 송금 등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식 취득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의 허가 또는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125g/m²)

[Form No. 18-2]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a Foreign Invested-Enterprise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Cancellation of a Foreign Invested-Enterprise)		Term of Completion One Day	
① Name of Foreign Investor		② Nationality	
Foreign- Invested Enterprise	③ Name	Korean : English :	
	④ Business Registration No.	⑤ Capital	
	⑥ Address	(Telephone:)	
	⑦ Type of Business Previously Authorized		
	⑧ Amount and Percentage of Foreign Investment	Won (USD), %	
	⑨ Legal Basis		
	⑩ Number of Regular Researchers		
	⑪ Reason(s) for Cancel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8,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For the Delegated Authority			
⑫ Registration Cancellation Number	No. (Year Month Day) (for the Delegated Agency's use only. Please do not write)		
For the Applicant The above is confirmed. Year Month Day Delegated Authority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Official Seal</td></tr></table>			Official Seal
Official Seal			
Required Documents (Copies acceptable unless otherwise stated.)		Processing Fee Exempt	
1. Documentation substantiating the applicant's stated reason(s) fo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2. Registration form for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Original document required).			

In section ⑧, please specify the actual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in Korea.
In section ⑨ and ⑩, please write onl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In section ⑨, please specify the business involving high technology related to Article 116-2, Paragraph 1,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Act.

210mm×297mm[Standard Paper 60g/m²(Recycled Paper)]

[별지 제20호서식]

회 사 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auto; width: 80%;"> 우 -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부서명 : 담당자 : </div>							
문서번호 : (전화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수신 : 국세청장 발신 (외국인투자기업명) 인							
제목 : 신고된사업외의사업영위상황등의보고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 영위여부와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①상호또는명칭		②사업연도		~		
	③본사소재지		④사업자등록번호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상황	신고된 사업 이외의 사업				⑦총매출액 (B)	⑧점유비율 (A/B, %)	
	⑤업태 · 품목	⑥매출액 (A)					
다른기업의 주식 (지분)취득상황	다른 기업		취득내용				
	⑨상호	⑩영위 사업	⑪수량	⑫액면총액	⑬취득총액	⑭주식 · 지분소유비율	⑮취득일

22225-05611번
98.11.1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회 사 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우 -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부서명 : 담당자 : </div>							
문서번호 : (전화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수신 : 관세청장 발신 인 (외국인투자기업명)							
제목 : 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본재 처분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외국인투자 기업	①상호또는명칭			②사업연도	~		
	③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			
신고하지 아니한 자본재 처분상황							
⑤품명	⑥수량	⑦규격	⑧도입금액	⑨처분금액	⑩처분처	⑪처분일	⑫관세법상의 수입신고수리일
구비서류 : 당해 자본재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2225-05711민
98.11.10 승인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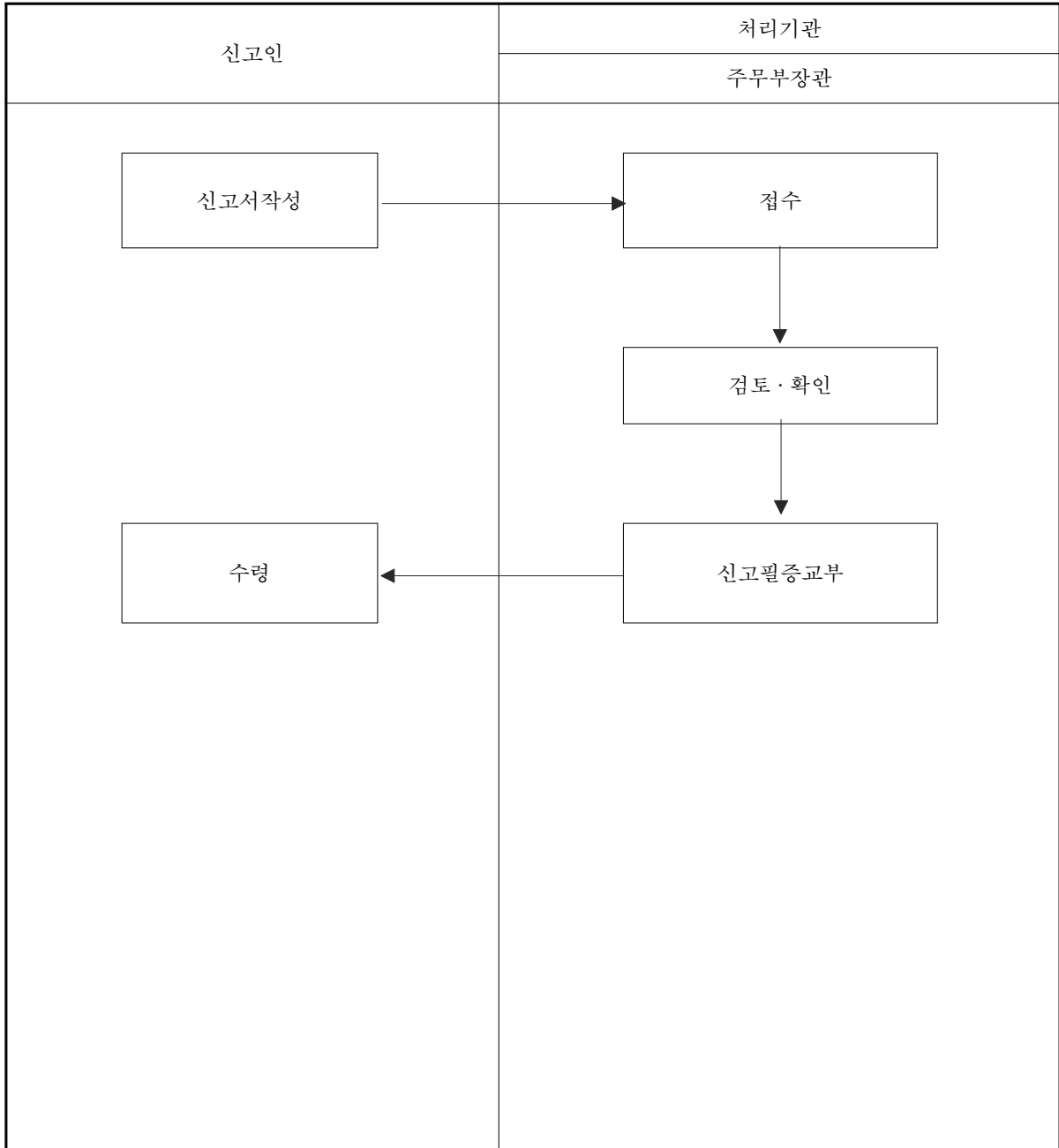
[Form No. 22]

Notification of <input type="checkbox"/> Transfer <input type="checkbox"/> Reduction of Stock or Shares					Foreign Investment		
					Term of Processing		
					Immediate		
Foreign Invested Enterprise	①Name	Korean		④Capital	Before Transfer or Reduction:		
		English				After Transfer or Reduction:	
	②Business Registration No.					(Telephone:)	
③Address							
⑤Transferrer (Reducer)					⑥Nationality		
⑦Transferee (if transferee is a foreign national)					⑧Nationality		
Details of Stock (Shares) to be Transferred(re-duced)	⑨Quantity	⑩Par Value per Stock (Shares)	⑪Total Par Value of Stock (Shares)	⑫Transfer or Reduction Price per Stock (Shares)	⑬Total Amount Transferred or Reduced		
⑭Quantity, Value and Percentage of Stock (Shares) held by Foreign Investor after Transfer or Reduction				Won(USD Shares %)			
⑮Other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For the Delegated Authority							
For the Applicant							
Notification No. : _____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Year	Month	Day	
				Delegated Authority :		Official Seal	
Required Documents (Copies acceptable unless otherwise stated.)					Processing Fee		
					Exempt		
1. Proof of the transfer or reduction of stock (shares).							
2. Proof of the lender's nationality (unless the transferee is a foreign investor in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as defined in Article 2, Paragraph 1, Item 5,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210mm×297mm[Standard Paper 60g/m²(Recycled Paper)]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외국인투자
					처리기간
					즉시
①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자등록번호				
신고된 내용	⑥외국인투자신고일		년 월 일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		
⑧세관 수입신고 수리일					
현물출자의 내용	⑨품명	⑩수량	⑪규격	⑫제작자	⑬금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관세청장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세청장 : [인]					
구비서류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2225-05511번
98.11.10 승인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0호서식] (2005.3.11 개정)						외국인투자	
<input type="checkbox"/> 조세감면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외국투자자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 업 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 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 고 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USD 원 상당)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⑩투자 방법	현 금	원	자본채	원	주 식	원	
	부동산	원	지적재산권등	원			
⑪입지							
⑫구 분		□ 신규 □ 증자		⑬사업개시일			
조 세 감 면 신 청 내 용	⑭감면대상 사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호에 해당				
	⑮감면사유						
변경 신청 내 용	이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내용			변경신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 는 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비고 : ⑮의 감면사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 되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해당항목을 기 입합니다. ㉞의 변경신청내용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Form No. 80] (2005.3.11. 개정)

						Foreign Investment
<input type="checkbox"/> Application Form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Term of Processing
<input type="checkbox"/>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20 Days
Foreign Investor		①Name		②Nationality		
③Name of the Foreign Invested Enterprise			④Business Registration No.			
Content of Foreign Investment	⑤Business of Notification		⑥Date of Notification			
	⑦Acquisition price of shares (USD)		⑧Aggregate par value of shares (USD)		Won	
	⑨Is the ratio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f sha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under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not less than 10 percen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⑩Method of Investment	Cash Amount	Won (USD)	Capital in Kind	Won (USD)	Shares	Won (USD)
	Real Estate	Won (US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tc.	Won (USD)		
⑪Factory Location						
⑫Type		<input type="checkbox"/> New Investment <input type="checkbox"/> Additional Investment		⑬The initial date of business operation		
Content of Application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⑭Legal Basis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⑮Reason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⑯Change of Content		Content of decision previously received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Content of application for change in previous Tax Reduction or Exemption decis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Year Month Day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Signature or Seal) (Telephone No :)						
To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Processing Fee
Required Document :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or explaining the reason for tax reduction/exemption or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exemption						Exempt
cf. ⑮ Fill in this section only if the business is related to Item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It should include th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business involving high technology and industry-supporting service business indicated in Annex 1 of the Regulation 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Royalty for the Technology Inducement Contract.						
⑯ This applies only when an Application for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is made.						

210mm×297mm(Standard Paper 60g/m²(Recycled Paper))

[별지 제81호 서식] (00.3.30.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③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④하고자 하는 사업명		
	⑤입지		
	⑥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호에 해당	
	⑦감면사유		
<p>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p> <p>기획재정부장관 귀하</p>			
구비서류: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2226-86711민
99.5.19. 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Form No. 81] (00.3.30. 개정)

		Foreign Investment	
Application Form for Prior Checking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Term of Processing	
		20 Days	
Applicant	①Name		②Nationality
	③Address	(Telephone No.:)	
Content of Application	④Business of Intent		
	⑤Location		
	⑥Legal basis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⑦Reason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p>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p> <p style="text-align: center;">Year Month Day</p> <p style="text-align: center;">Applicant (Signature or Seal)</p> <p style="text-align: center;">(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No.:)</p> <p>To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p>			
<u>Required Documents</u> :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if a tax reduction/exemption applies.		Processing Fee	
		Exempt	

22226-86711Civil-Affair Form
Approved 99.5.19210mm×297mm
(Standard Paper 60g/m²(Recycled Paper))

[별지 제82호서식] (00.3.30. 개정)

사업개시일신고서				외국인투자
				처리기간
				7일
외국인 투자 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⑥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⑦업 태		⑧외국인 투자신고일	
	⑨종 목		⑩사업자 등록일	
⑪사업개시일 또는 자본증가변경등기일			⑫조세감면결정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서장 인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3호서식] (2005.3.11. 개정)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제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		
	⑦법 제121조의3 제1항제1호에 의한 자본재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⑧법 제121조의3 제1항제2호에 의한 자본재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⑨도입자본제의 명세	HSK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공급자	가격(USD)	
<p>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p> <p>세관장 귀하</p>							
						수수료	
						없음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p>※ 비고</p> <p>⑦,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회 면제신청 금액·금회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⑧란은 외국인투자가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